



제 437회 국회 (임시회)
제 2차 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4400호)

2026. 7.

국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민형배 · 주철현 · 김우영 · 이성윤 · 김문수 · 정준호

김용민 · 조계원 · 소병훈 · 최혁진 의원(10인)

2. 제 안 일 : 2025. 11. 19.

3. 회 부 일 : 2025. 11. 20.

※ 의안번호 : 1440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다른 법률을 근거로 한 인사청문 자료제출 거부행위를 금지해 국회의 인사검증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소통과 국정운영 역량 뿐 아니라, 적소적재에 유능한 인재를 기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인사청문회가 바로 ‘좋은 인재를 가려 뽑는 과정’으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업무역량이 부족하거나 도덕성에 하자가 있는 공직자 임명은 결국 시민 피해로 귀결합니다. 무책임한 측근 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국회의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해야 하며, 이를 위해 자료제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타 법률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는 불응이나 허위제출 시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고위공직후보자는 책임 있는 자세로 인사청문회에 임해야 하며, 이번 법 개정은 인사청문회의 내실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안 제12조).

Ⅲ. 검토의견

1.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규정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르도록 하되, 국가기밀, 근친자의 형사책임, 업무상비밀에 해당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한 사항은 소명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 ----- ----- ----- ----- ----- ----- 이 경우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1)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2.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2)에 해당하는 경우

현행	개정안
<u><신설></u>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3.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으로서 자료제출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 ----- ----- - 다만, 제1항 후단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거부 사유를 해당 기간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현행법³⁾에 따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기관은 원칙적

- 1)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국무총리(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 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3)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제출된 사유서를 심사결과보고서 또는 인사청문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 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 ② 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으로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 국가기밀, 업무상비밀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

그러나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공직후보자의
부동의나 다른 법률상 비밀유지의무 등⁴⁾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하
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적시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에 의
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되, 현행법상 답변등의 거부사유⁵⁾에 해당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자료제출 시 직무수행을 현
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어 자
료제출을 거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도록 하는 것임.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⁶⁾은 국회의 서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
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 등

5)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6)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증인출석 등의 의무)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
사와 관련하여 보고와 서류 및 해당 기관이 보유한 사진·영상물(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제출 요구를 받거나, 증인
·참고인으로서 출석이나 감정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증언 등의 거부) ① 증인은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서·증언 또는 서류등
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등의 제출) ① 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증언의 요구를 받
거나,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등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등의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 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
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이 명백하다고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
는 해당 관서의 장)이 증언 등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소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류등 제출요구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자유 침해 염려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⁷⁾이 자료제출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⁸⁾

이에 비추어 볼 때, 개정안이 입법화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 등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게 되므로, 자료제출과 관련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인사청문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것으로 보임.

다만, 인사청문을 위한 자료제출요구에도 헌법 제17조⁹⁾에 따른 사생활 침해 금지 원칙과 제37조제2항¹⁰⁾에 따른 과잉금지 원칙이 준수되어야 하는 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¹¹⁾ 등은 수집·보유만으로도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큰 점¹²⁾ 등을

7)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범위) ①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8. (생략)

8) 헌법재판소 2025. 4. 10. 선고 2024헌나6 범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

9) 「대한민국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10) 「대한민국헌법」 제37조 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서 생략)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12) 사상이나 신조에 관한 정보, 범죄나 전과사실, 병력 등과 같이 그 자체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을 드러내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에는 그 수집 내지 보유만으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공개·활용에 있어서도 특별히 강화된 보호를 필요로 함(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0헌마293 전원재판부 결정).

고려할 때, 개정규정의 입법 여부는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자료 확보라는 공익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비교형량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판단됨.¹³⁾

참고로, 개정안과 동일하게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가 다른 법률에 우선하도록 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11461호)」에 대하여,¹⁴⁾ 금융위원회는 금융거래정보 등은 개인의 모든 행위를 추적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비밀보장 원칙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강화된 법적 장치의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한편, 법제적 측면에서는 자료제출 거부 사유를 개정안 제12조제1항 각 호와 현행법 제16조¹⁵⁾에 분산하여 규율하고 있으므로, 이를 일괄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3) 개인정보보호 또는 영업비밀보호 등의 이유로 국회의 서류등 제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24. 11. 28.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떠한 예외를 두지 않고 국회의 자료제출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재의를 요구한 바 있음.

14) 이 외에 개정안과 유사한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의안번호 제 3186호, 제6819호, 제10972호)도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들 5건의 개정안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15) 「인사청문회법」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②공직후보자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거부이유는 소명하여야 한다.

2. 자료제출요구 미이행 또는 부정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4항).

[표-2]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④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u>아니한 때에는</u>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④ ----- ----- ----- -----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기관의 장(대통령 및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에서는 해당 관서의 장)에 대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u>

현행법¹⁶⁾에 따르면, 위원회는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자료제출을 요구

16)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경고할 수 있다.

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해당 기관에 대해 경고할 수 있음.

해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자료요구를 받은 기관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더라도 구속력 있는 제재가 불가능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경고 대신 해당 기관의 장의 해명 또는 관계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함으로써,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을 높이고 인사청문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¹⁷⁾에서도 ‘국가기관’이 서류등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본회의나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해 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개정안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음.

다만, 위원회의 자료제출요구 대상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에 ‘민간 기관 등’도 해당하고 해명·징계 등 위원회가 요구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강제할 법적 수단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제재의 구속력

17)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서류등의 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치요구) 국회는 제2조에 따라 서류등의 제출을 요구받은 국가기관이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주무부장관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과 같이 자료제출요구의 실효성을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의안번호 제1673호, 제3186호, 제6819호, 제10972호)이 국회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동 개정안 심사 시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015